

창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12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1231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319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7. 1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319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망 D와 피고가 2021.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망 D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1. 5. 24. 접수 제77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25.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23. 2. 7. 기준 미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합계
35,644,459원(= 원금 34,333,211원 + 수수료 63,381원 + 이자 1,247,867원)이다.

나. 망인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던 중인 2021. 5. 13.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1. 5. 24. 접수
제772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남 남해군 E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는
날인 2021. 5. 13. 다른 자녀인 F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2021.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22. 5.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와 F은 2022. 8. 5. 예금 900여만 원을
적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2억 2,100여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22. 11.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느단10403호).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F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카드대금의 상속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단118834 상속채무금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2. 22.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7,652,741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4,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경남 남해군 E 토지를 피고와 F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과 경남 남해군 E 토지를 피고와 F에게 모두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1. 5. 24. 접수 제77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이후 관련사건에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652,74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어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한정승인을 함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 상속될 것이므로, 위 지분의 범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어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뿐 이에 관한 망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애경, 판사 김은엽, 판사 김주미

별지